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,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3항 및 제4항 중 “시장·군수”를 각각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시장·군수”를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100개”를 “50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) ① <u>시장·군수</u>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(이하 “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려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제3조(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) ①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<u>시장·군수</u>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.	②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</u>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<u>시장·군수</u>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	③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<u>시장·군수</u>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	④ <u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</u> ----- -----

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·관리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)
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”란 각각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가목·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,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이고,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.

제4조(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
표지판 등 설치·관리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
[illegible]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254